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사례

2001. 8. 1.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계경바이오텍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1광고0281)	(주)계경바이오텍은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근거가 없음에도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간 기능 정상화 및 어린이 학습능력에 뛰어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가피 열매제품이 국제적으로 공인되었고, 인삼이나 기존의 뿌리 및 껍질 제품보다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고, 미국에 직접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0박스를 수출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며, 서울대, 공주대, 대전 우송대학교와 공동으로 제조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만든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 일간지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단국대학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1광고 0391)	학교법인 단국대학교는 2001. 1. 15.부터 같은해 3. 5. 기간 중 중앙일보 등 5개 일간지에 총 21회에 걸쳐 자신의 사회교육원 「애니메이션전문가과정」에 대하여 광고를 하면서 「애니메이션 국가자격제도」가 노동부의 2001년 추진중인 계획이었으나 사실상 무산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 애니메이션 국가자격제도 신설확정」이라고 광고한 것은 마치 등 제도의 시행이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기광고한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1회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1. 8. 7.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1광사1374)	전라북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장기적인 건설경기의 침체로 레미콘을 덤펑 판매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되자, 2000. 7. 21. 자신의 조합 회의실에서 이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개최, 과당경쟁 방지 및 경영난 극복을 위해 민수레미콘가격을 각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주·완주지역	◎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동 사실을



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은 권장가 대비 83%, 무진장 및 서남지역은 87%, 기타 지역은 85%선을 유지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2000. 8. 1.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준수도록 하는 등 전북지역 민수레미콘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제1호 위반</p>	<p>전북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지방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 과징금 납부 : 10,800천원</p>

2001. 8. 10.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태평양의 거래거절행위 등에 대한 건 (2001경총0214)	<p>(주)태평양은 1998. 2. 12. 이광연과 자신의 헤어제품 및 바디제품에 대한 특약점(대리점)계약을 체결, 거래를 해오고 있던 중, 2000. 2. 21.부터 3. 15.까지 23일간 이광연에 대해 타사제품판매, 재고관리소홀, 자신의 지원으로 채용한 판매사원의 타사제품판매에의 이용, 월별영업회의 불참 등을 이유로 이광연에 대한 제품공급을 중단하였고, 2000. 5월경 '특약점이 공정거래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타사 특약점을 겸업하는 행위는 다른 특약점에 대해 파급효과가 우려되므로 다른 특약점에 대한 견제도모를 위해 반드시 거래를 해지해야 한다'는 [구점주 거래해지 및 신점주 영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00. 2월부터 2000. 12월까지는 특약점 재고조사 및 실제 재고와 전산재고의 일치를 유통질서확립 및 가격질서확립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월별전략회의 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 특약점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한편, [월별전략회의 자료]와 [2000년 목표달성을미나 자료] 등을 통해 자사 특약점 및 전문점들에게 각 유통단계별 제품판매가격을 시달, 자사 제품에 대한 유통·가격스티커 부착 및 암호도장날인, 특약점 재고조사 및 자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가격조사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특약점으로 하여금 일정한 가격으로만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제5호와 제29조 위반</p>	<p>◎ 거래거절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거래하는 모든 특약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광주지역 3개 백화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1광사1569)	롯데쇼핑(주), (주)광주신세계백화점, (주)송원은 2001년 3월 31일까지 VIP고객들에 대하여 정상상품을 기준으로 최고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같은 날 (2001. 4. 1) 동 할인율을 최고 5%로 인하·조정하는 한편, 2000년 1월부터 우수고객들에게 생필품 무료 증정권을 우송, 매월 약 1~2회 실시되는 생필품 증정행사 기간에 이를 제시하는 고객들에게 무료로 생필품을 증정하여 왔으나, 2001년 4월 첫 번째 생필품 증정행사부터 그 조건을 변경, 무료 증정권을 소지한 고객 중 당일 1만원 이상 구매실적이 있는 고객들에게만 생필품을 증정함으로써 같은 시기에 동일한 내용으로 생필품 무료 증정조건을 변경하는 등 공동으로 상품의 거래조건을 결정함으로써 광주지역 백화점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제5항 위반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광주지역에서 발행하는 2개 지방일간지 전판에 5단×18.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탄현지구중개업자친목회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 (2001단체0409)	탄현지구중개업자친목회는 기존의 부동산중개업소가 많이 있는 상가에 신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개업하게 되면서 경쟁의 심화로 자신들의 소득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는 회원업소들과 비회원업소간에 관계가 불편해 지자, 2001. 5월 비회원 3명의 명단과 “거래 삼가업소”라고 적시한 “전산망 관련의 건”이라는 유인물을 작성한 후 회원업소에게 배포, 비회원업소들과는 공동중개거래를 하지 말도록 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위반	◎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부동산 관련 전문지에 3단×10cm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1. 8. 1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4개 제약회사들의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2001단체1576)	명인제약(주), (주)유영제약, 한국야마노우찌제약(주), 한영제약(주)는 의료보험 적용 의약품의 가격제도가 1999. 11. 15. 자로 ‘고시가 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변경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자신이 생산하는 의약품의 기준약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와 거래하는 의약품 도매상들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거래처인 도매상에게 서면으로 통지 및 1개 중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있는데, 명인제약(주)는 1999. 11. 25.부터 2001. 2. 8. 까지 경수약품 등 9개 의약품도매상들의 의약품 저가 낙찰 건에 대하여, 동 도매상들에게 손해배상청구와 관계기관 등에 신고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고, (주)유영제약은 자기와 거래하는 도매상이 요양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일 이전에 문서를 보내 기준약이 이하로는 응찰하지 말도록 하였고, 2001년부터는 도매상이 기준약과 보다 낮게 낙찰받은 경우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와 거래하는 도매상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경우 기준약과 보다 낮게 납품하려는 도매상에 대하여는 의약품 공급을 거절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사실이 있으며, 한국야마노우찌제약(주)와 한영제약(주)는 약가제도가 고시가 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변경되는 시점인 1999. 11. 15.을 전·후하여 당시 거래하던 도매상들에게 기준약가 준수를 요구, 자신이 공급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도매상의 저가 납품으로 인하여 기준약가 인하 등 불이익이 발생되면 의약품 공급계약 파기 및 해당 도매상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등 도매상으로 하여금 요양기관에 의약품 판매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약가' 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위반</p>	<p>양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하고, 명인제약(주)는 거래약정서 제1조를, (주)유영제약은 거래약정서 제12조를, 한영제약(주)는 거래약정서 제2조를 각각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함</p>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및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부산광역시서점조합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 등에 대한 건 (2001부사0111, 2001부사1528)	(사)한국출판인회는 2000. 10. 12. 「도서정가판매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회원사 및 전국 서적도매상들로 하여금 도서를 할인판매하는 「온라인서점」 및 「대형 할인매장」에 도서 공급을 중단토록 하였고, 종합서점상조회도 2000. 11. 19. 자신의 회원사로 하여금 위 「온라인서점」 및 「대형 할인매장」에 서적을 공급해온 출판사인 「문학수첩」과 「(주)삼성출판사」의 서적을 불매토록 한 적이 있는데,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2000. 11. 15.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소재 연합회 회의실에서 부산서점조합장 등 8개 지방서점조합장과 종합서점상조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 동 회의석상에서 종합서점상조회의 『(주)삼성출판사』 및 『문학수첩』에 대한 서적불매운	<p>◎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및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부산광역시서점조합은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하고,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부산광역시서점조합은 이 시</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동에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도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부산서점조합 등 각 시·도 조합별로 불매운동에 관한 자체 계획을 수립·실행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 행위를 하였고, 한편 부산서점조합은 산하조직인 『금정지구위원회』 등 15개 지구위원회를 통하여 1998. 1. 1.부터 2001. 4월까지 25명으로부터 신규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각각 300만원을 징수하는 등 부산광역시 도서류 판매시장에서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각각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 위반	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부산광역시 지역을 벌행 대상지역으로 하는 1개 지역 일간지 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제 · 시 · 편

본 협회,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매뉴얼) 열람 실시

본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및 우리 나라 주요 기업의 준수편람(매뉴얼)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으로 미국 GE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에 관한 가이드, 일본 NEC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편람, 미국 변호사협회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매뉴얼(Allied Signal Inc, Amoco, The BFGoodrich, Chevron, Columbia/Health Care, The Dow Chemical, General Electric, General Motors, Hogan & Hortson, IBM, ITT, Mobil, Owens-Illinois, Pfizer, The Quaker Oats, Rohm and Haas, Scientific-Atlanta Inc, TRINOVA, United Technologies, Dupont 등), 그리고 우리 나라 삼성전자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과 LG그룹의 공정거래법 업무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회원사에서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코자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 바랍니다.